

안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의안 번호	1011
----------	------

제출연월일 : 2001. .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보건 진료소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관할지역내 주민으로 구성함 (안 제2조).
- 나. 협의회의 정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 다. 협의회의 기구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 라. 협의회의 재정에 관하여 정함 (안 제7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밟춰서 : 별첨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

- 입법예고 : 2001. 10. 20. ~ 2001. 11. 8. (20일간)
-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기타 참고사항

-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 용진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안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조직) ①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는 회원의 합의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
4.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자산 ·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협의회의 임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제5조 (기구) ①협의회는 각 통 · 반에서 선출한 100인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12인이내의 운영위원회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총회 및 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임원) ①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감사 1인

4. 운영위원 12인이내

- ② 협의회의 임원은 협의회의 회원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
-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⑤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⑥ 회장·부회장·감사는 운영위원을 겸할 수 있다.

제7조 (재정) ①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및 기타수입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③ 협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협의회의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 ④ 협의회의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결과를 회계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구성·운영하고 있는 대부남동보건진료소운영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후 2월이내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게 협의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소관 실·과		보 건 소
입 안 자	실·국장 직위·성명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담당·팀장 직위·성명	보건행정담당 정 규 상
	담당자 성명·전화	김 춘 근 (행정 2551)